



일본기독교협의회 여성위원회에 의한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일본 보고서
2024년 9월

연락처 :

야스다마유코 일본기독교협의회 상의원 (일본복음루터교회 파견)

yasuda.mayuko@aol.com

오오시마카오리 총간사

oshima@ncc-j.org

키타무라케이코 여성위원회 위원장

g932550@gmail.com

일본기독교협의회

도쿄도 신주쿠구 니시와세다 2-3-18-24

03 - 6302 - 1919

소개

이 글은 일본에서 현저하게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는 여성들의 차별실태에 관하여, 2024년 10월 일본 리뷰에 앞서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다. 특히, 1) 젊은 여성, 2) 성적 착취 피해를 당하는 여성, 3) 미군 기지가 집중된 오키나와 현에 사는 여성, 4) LBT 여성, 5) 이주민 여성, 6) 재일한인 여성, 그리고 7) 결혼 시 강제로 성을 바꾸어야 하는 여성 및 혼외자 차별에 초점을 맞추었다.

일본 정부는 여성 차별 철폐 조약 실시 상황 제9회 보고(이하 제9회 보고)에서, 주변화된 여성들의 차별 실태 조사와 분석, 성폭력이나 성적 착취 피해 여성에 대한 지원은 충분하며, 또한 포괄적인 차별 금지법을 국내에서 제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 게다가 일본은 여성차별철폐조약의 선택의정서를 비준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세계경제포럼 '젠더 격차 지수 2024'에 따르면 일본은 146개국 중 118위였으며 G7 회원국 중 최하위로 현저히 낮은 순위였다. 또한 본 보고서가 밝히듯이 주변화된 여성들은 현저하게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대응은 불충분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조속히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선택의정서를 비준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일본복음루터교회(JELC)의 지원을 받아 일본기독교협의회(NCC) 여성위원회가 제출한다. 여성위원회는 기독교회가 가부장제 지배와 억압, 이성애주의와 성별 이원론 등을 강화, 재생산하는 성경의 어구를 이용하면서 차별과 폭력, 억압에 가담해 온 것에 대해 반성하는 자세로(NCC「젠더 정의 기본 방침」), 보고서 집필에 임했다. 집필은 일본 YWCA, 일본기독교 부인 교풍회, 기지·군대를 반대하고 행동하는 여성들의 모임, 신앙과 섹슈얼리티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모임, 마이너리티 선교센터, 재일대한기독교회 전국교회 여성연합회가 분담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일본군 성노예 제도(위안부)나 부락의 여성, 아이누 여성, 장애를 가진 여성 등의 권리 침해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했지만, 일본 정부는 그들이 받는 차별이나 다양한 형태의 폭력도 인식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힘써야 한다.

방법론

본 보고서는 CEDAW(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체약국의 의무를 달성하기 위해 실시해 온 일본 정부의 대처에 대한 조사, 분석, 평가를 바탕으로 집필했다. 개선된 점과 바뀌지 않은 점을 밝히기 위해 일본 정부의 과거 보고서, 유엔의 코멘트와 권고, 시민사회조직이나 학술기관에 의한 조사결과와 보고서 등을 이용했다. 집필과정에서는 시민단체와 기독교단체, 활동가 등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협의를 거듭했다. 또한 온라인 그룹 토론 개최를 통해 폭넓은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했다. 20여명이 참석했고 그 중 젊은이가 2명, 남성이 3명이었다.

차별실태와 제언

1. 젊은 여성

제3조 : 적절한 조치

제10조 : 교육

제12조 : 보건

사회적 돌봄을 필요로 하는 소녀들

일본에서는 대학 진학을 전국 평균이 50%를 넘는다. 그러나 아동보호시설 출신자의 경우 약 18%, 위탁 가정 출신자는 약 30%이다. 또한 아동보호시설 등 퇴소자인 여성은 불안정고용으로 불리는 파트·아르바이트 취업이 17.8%, 계약사원 등이 9.8%, 그리고 취업하지 않은 비율이 14.9%로 모두 퇴소자 남성 보다 더 많다ⁱⁱ.

고등학교, 대학에 진학했다 하더라도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퇴학을 하는 경우가 많다. 시설 출신자들이 중퇴를 하는 주된 이유는 학습 의욕 저하, 정서 불안 등의 심리적인 문제이며,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다. 퇴학은 아동 학대 건수 증가와 비례 관계에 있으며, 학교에서도 학대 경험으로 생긴 트라우마에 따른 심리적 불안으로 학업을 이어 나가기 어렵다ⁱⁱⁱ. 실제로 2022년도에 전국 아동상담소가 대응한 아동학대상담 건수는 219,170으로 과거 최다였다^{iv}. 이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젊은이들, 특히 젊은 여성들에 대한 능력 개발 및 향상 조치는 충분하지 않다.

YWCA가 운영하는 자립지원 홈 '카루나'에서는 2015년부터 지금까지 안심할 수 있는 주거 제공과 사회적 자립을 위한 취업지원 등 총 65명의 젊은 여성을 지원해 왔다.

조성금의 확충으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진학은 이전보다 쉬워졌다. 그러나 아동보호시설 등을 나와 자립하는 과정에서의 높은 장벽, 학대 경험에서 오는 심리적 트라우마나 발달장애 등의 특성으로 정한 진로에서 벗어나 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카루나 관계자는 보고하였다.

현재 제10조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대처는 없고, 시설의 직원이나 사회적 보호를 받는 당사자에게 떠넘기고 있다. 사회나 직업을 알 기회를 적극적으로 마련해 줌으로써, 젊은이들이 자각하여 본인이 납득할 수 있는 장래 선택이 가능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능력 개발·향상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본다.

성과 생식에 관한 건강과 권리

유엔 어린이 권리위원회는 일본 정부에 포괄적 성교육과 성과 생식에 관한 건강과 권리에 대해 학교의 필수 커리큘럼의 일부로 배울 기회를 확보하고 포괄적인 정책 실시를 권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또 중학교 학습지도 요령에서는 '수정·임신까지를 다루도록 하고, 임신의 경과는 다루지 않는다'라고 하여, 현장에서는 '성교'를 가르치지 않게 되어 있다. 이는 CEDAW 제10조 및 제12조를 위반하며, 일본의 젊은이들, 특히 성 피해를 입기 쉽고 취약한 위치에 있는 젊은 여성들이 성에 관한 자기 권리를 알기 위한 '교육적 정보를 누릴 기회'를 빼앗는 것이다.

정부에 대한 제언 :

- 상담기관, 사회적 양호시설의 직원을 늘리고 대우를 개선해야 한다.
- UNESCO '국제 성교육 지침'에 근거한 포괄적 성교육을 학교 현장에 도입해야 한다.
- 학습지도 요령 개정. 구체적으로는 이하 3곳.

1) 『초등학교 학습지도 요령(2017년 고시)』 148P. G보건(2) (ㄴ)의 '또, 이성애의 관심이 싹트는 것'을 '또, 이성·동성에 관계없이, 타인에 대한 성적 관심이 싹트는 것'으로 변경할 것.

2) 『중학교 학습지도 요령(2017년 고시)』 129 P. 「3 내용의 취급」의 (7)을 수정할 것을 제안한다. 수정안 : 성교를 포함한 임신의 경과를 다룬다. 또한 신체 기능의 성숙과 함께 성충동이 생기거나, 이성·동성에 관계없이 타인에 대한 성적 관심이 높아지는 것도 예상되므로, 성별을 불문하고 인권의 존중, 정보에 대한 적절한 대처와 행동의 선택이 필요해지는 것에 대해 다루도록 한다.

3) 『고등학교 학습지도 요령(2018년 고시)』 139 P. 「3 내용의 취급」의 (7)의 수정을 제안한다. 수정안 : 생식에 관한 기능에 대해서 인권 사상에 바탕을 둔 교육을 실시할 것. 책임감을 기르는 것이나 성에 관계없이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 성에 관한 정보 등에서의 적절한 대응에 대해서도 다루도록 배려한다.

2. 성적 착취 및 가정폭력 피해를 당하는 여성

제2조 : 계약국의 주요 의무

제5조 : 성별에 따른 역할

제16조 : 혼인 및 가족관계

생성 AI를 포함한 아이의 성적 학대/착취 소재 (CSAM/CSEM)

인터넷상에서의 성적인 이미지나 동영상의 투고가 상업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SNS 상에서의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고, 또 피해를 입은 아이를 구제하는 구체적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제9회 보고(문 9답 24)에 기재되어 있는 현행법에 의한 대응은 불충분하다.

이제 이미지 생성 AI(인공지능)는 인터넷상의 방대한 이미지를 학습하고 사람이 문장으로 지시하는 것만으로 실제 인물이나 풍경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한 이미지를 생성하게 되었다. 생성 AI가 만들어 내는 아동의 성적 학대 이미지(CSAM)의 대부분이 실제 아동의 사진으로부터 만들어지고 있지만, '아동 매춘, 아동 포르노에 관련된 행위 등의 규제 및 처치와 아동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아동 매춘·아동 포르노 금지법)'에서는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로 생성 AI에 의한 CSAM은 규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생성 AI가 만들어 내는 CSAM이 실제 아동의 사진을 기초로 하고 있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규제할 수 없다. 애초에 현행 아동 매춘·아동 포르노 금지법은 AI가 만드는 아동 포르노(CSAM/CSEM)를 전혀 상정하고 있지 않다.

피해 당사자의 소리를 성폭력 예방에 도입

피해 생존자 그룹, 국내 NGO 교풍회는 당사자인 생존자(아동 성착취·성폭력 피해 당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G7 히로시마 정상회담을 맞아 애드보커시 활동을 해왔다. 2023년 5월 G7 히로시마 정상회담은 '분쟁과 관련된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대응 강화 및 생존자 중심의 접근법을 통해 피해자·생존자에게 포괄적인 지원과 의미 있는 참여를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v고 언급하고 있어, 생존자의 목소리를 추가적인 폭력 예방과 대책을 위한 정책에 활용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이 약속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나 구조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여성 지원 단체 및 활동가에 대한 공격

일본 정부는 여성 인권 옹호 활동가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하고 있지 않다. 최근 가정에 안전장소가 없고, 성착취·성학대의 위험이 높은 젊은 여성을 지원하는 단체나 개인을 인터넷 등에서 공격하여 헛소문을 퍼뜨리거나, 지원 현장에서 욕설을 퍼붓거나, 지원하는 모습을 인터넷에 투고해 헐뜯거나, 이용자나 관계자를 특정하는 등의 공격이 잇따르고 있다. 공격하는 사람 중에는 캠페인을 벌여 자신의 주장을 두고 사이트 등에서 판매해 수익을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격렬한 공격을 당해 스태프가 정신적으로 궁지에 몰리거나 공적 보조금이나 기부가 격감해 계속 활동하기가 곤란해지는 여성 지원 단체도 있다. 이러한 공격은 여성 인권 옹호 활동가, 정치인, 운동가 또는 언론인에 대한 유해한 상습 행위와 범죄에 해당하며, 바로 여성에 대한 젠더 기반 폭력이다^{vi}.

공동친권과 가정폭력 피해여성

2024년 5월, 이혼 후 부모 쌍방에게 친권을 인정하는 '공동 친권'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민법이 성립되었는데 이것은 전 남편·아버지로부터 가정폭력·학대 피해를 당했던 전처와 자녀에게, 가해자인 전 남편, 아버지와 관계를 다시 강제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시행

은 공포로부터 2년 이내가 된다. 이 법에 따라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할 때에는 공동친권으로 할지, 단독친권으로 할지를 부모가 협의에 의해 결정하고, 의견이 대립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판단하여 자녀에 대한 학대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비학대 부모에게 단독 친권을 인정하게 된다.

이 법에 대해서는 현재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우선, 공동친권하에서는 자녀의 진학이나 수술, 혹은 이사나 전학 등 여러가지 일에 부모 양쪽의 대화나 양해가 필요하게 되는데, 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와 같이 의사소통이 현저하게 어려운 관계에서는 위와 같은 당사자간의 협의는 매우 어렵다. 가정 법원이 학대 부모에게 공동 친권을 인정하는 일이 없도록 가정 법원이 정확하게 학대 여부 등을 확인 가능한 체계도 갖추어져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합의·강제형' 공동친권을 가능하게 하는 본 법률이 시행되면 가정폭력·학대로 이혼한 피해 여성이나 학대를 받은 자녀가 가해자인 전 남편·아버지의 그림자에 짓눌려 두려워하며 불안 가운데 살게 된다.

정부에 대한 제언 :

- AI로 인한 아동의 성적 이미지를 규제하는 법을 정비하고 SNS상에서의 아동의 성적 피해 방지를 위한 플랫폼을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
- 일본 정부는 국내 정책이나 행동 계획의 입안·실시에 성폭력 피해 생존자의 소리를 공식적으로 도입하는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 여성 지원 단체나 개인이 안전하게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 일본 정부는 이혼 후 공동친권 도입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아동을 포함한 당사자 및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하여 사법예산을 늘리고, 가정폭력 및 학대피해자를 보호하는 시책을 강화해야 한다.

3. 미군 기지가 집중된 오키나와현에 사는 여성

제2조 : 체약국의 주요 의무

제3조 : 적절한 조치

오키나와의 여성들이 처한 상황

미군기지가 과도하게 집중된 오키나와에 사는 여성과 아이들은 미군에 의한 강간·성폭력이나 살인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일본 정부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고 있다. 미군에 의한 범죄가 특수한 것은 미일지위협정으로 다양한 특권이 미군·미병에 부여되고 있기 때문이다(아래 참조).

오키나와의 여성과 아이들이 오키나와 이외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요인의 하나는 오키나와에 기지가 집중되어 있는 것에 있다. 오키나와현은 인구 약 146만, 일본 전체 면적의 0.6%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주일미군 기지의 70.6%가 존재하고, 오키나와 본섬 면적의 15%를 점거하고 있으며 또 주일 주둔 미군 병사의 70% 이상이 오키나와에 배치되어 있다. 게다가 주일 미 해병대원의 90%가 주둔하는 것이 오키나와 미군기지의 특징이다. 과중한 기지 기능에 필요한 규모의 미군 부대 주둔으로 오키나와의 여성과 아이들의 안전이 침해당하고 있다. 나아가 미일 안전 보장 조약의 제6조에 의해 규정된 「미일지위협정」에는 「미군 우위·미병 우위」가 포함되어, 이것이 오키나와의 여성과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지위협정은 미국의 일본국내 기지 사용(제2조), 기지의 「설정, 운영, 경호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제3조)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군 구성원과 그 가족이나 미국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선박, 항공기, 차량은 기지의 출입이나 기지간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제5조), 군 구성원에게는 출입국 관리법이 적용되지 않아 여권이나 비자 없이 일본에 출입할 수 있다(제9조). 그리고 무엇보다 공무 중인 미군, 군속에 의한 범죄는 미국이 재판권을 갖게 되어 있다(제17조).

주둔 미군에 의한 기지 밖에서의 범죄 행위

「여기는 미군기지와의 경계선입니다. 허가 없는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위반하는 사람은 일본 법률로 처벌합니다」라는 경고판이 미군기지의 게이트 앞이나 울타리에 일본어와 영어로 게시되어 있다. 기지와 인접한 지역에 생활하는 여성과 어린이 주민은 미군기지 내에서 일하는 허가서나 초대가 없는 한 마음대로 기지로 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주둔 미군 병사들의 기지 외부 행동의 자유는 미일지위협정에 의해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경계선을 넘어 인접한 오키나와의 지역사회에 들어갈 수 있으며, 여기서 상해·사망 등의 사고와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지위협정 제17조에 더해 미군과 오키나와 사람들 사이에 있는 '이동의 자유'에서의 불균형으로 미군기지는 범죄를 저지른 미군의 은닉처가 되어 버렸다.

2023년 이후 미군에 의한 성폭행 사건은 5건 있었지만, 그 중 3건은 2024년 7월 관방장관 기자회견이 있기까지 공개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vii}. 2023년 12월에는 미 공군 병장에 의해 16세 미만의 소녀가 유괴되어 성폭력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2024년에는 여성이 미 해병대원에게 성폭력을 당한 사건이 2건 있었다^{viii}. 앞의 두 사건에 대해서는 2024년 6월까지 보도되지 않았다.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피해는 그 몇 배나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오키나와에서 일어난 미군 관계자에 의한 형법범 검거 수는 2022년 54건, 2023년 72건에 이르며, 이 중에는 강간 등의 강력 범죄가 포함되어 있다^{ix}. 위의 형법범 검거수는 어느 해나 미군 관계자에 의한 형법범의 전국 검거수의 절반을 넘고 있으며 여기에도 오랜 세월을 걸친 오키나와 사람들, 특히 여성과 아이들이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온 것이 드러난다.

일본 정부·미군·미국 정부의 불충분한 대응

일본 정부는 CEDAW에 근거해 국내 형법 개정에 나서고 있지만 강간·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목소리를 높이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2017년 7월 110년 만의 형법 개정으로 '친고죄'는 폐지되었고, 또 2023년 7월에는 '부동의성교등죄'로 법 개정은 진행되었지만, 아직도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다'는 논리가 강하고, 2차 강간도 드물지 않은 가운데 피해자가 목소리를 내기는 어렵다.

미 행정부와 미군은 '유감의 뜻'을 표명, '기강잡기'를 약속하고 일시적 조치로 기지 외출 제한 등을 실시하는 한편, 범죄의 왜소화를 도모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현민과의 정보공유를 신속하게 하지 않는 등 미 정부의 비위를 맞추는 듯한 자세가 보인다. 미군 관계 사건에 관해서는 1997년 미일합동위원회 합의에 의거, 정부가 지역사회에 대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정보공유를 실시하는 기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능하지 않았다. 정부는 2024년 7월부터 이 기구의 운용을 개선했지만, 그것도 국내에서의 운용에 머물고 있다^x. 미일 양국 모두 미군에 의한 범죄를 미일관계를 불안정하게 하는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어 인권침해로서의 인식은 없고, 사건을 덮는데 급급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에 대한 제언 :

- 미군 관계자의 특권을 옹호하는 「미일안전보장조약」 「미일지위협정」을 재검토해야 한다.
- 오키나와의 여성과 여아를 모든 형태의 성적·젠더에 근거한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 미군 관계자에 의한 오키나와의 여성과 아이들에 대한 폭행이 집중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오키나와에 대한 기지 집중을 완화해야 한다.
- 미군 관계자에 의한 성폭행 사건에 대해 지역사회를 향해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공유를 철저히 해야 한다.

4. LBT여성

제12조 : 보건

제15조 : 법 아래 평등

제16조 : 혼인 및 가족관계

일본 사회에서 성소수자의 가시화는 진행되고 있지만, 레즈비언,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여성(LBT 여성)이 처한 상황이 반드시 인권의 과제로서 인식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동성 파트너십의 법적 보장

현재 행정 서비스로 '동성 파트너십 인정 제도'가 제공되고 있다. 458 지자체가 채용(총인구 대비 85%남짓)하고 있지만(2024년 6월 1일 현재) 법적 효력은 없다. 또, 도쿄도, 오사카부, 효고현 등 인구가 집중하는 지역이 채용하고 있어 지역 격차가 크게 존재한다.

일본에서 동성끼리의 파트너십은 법적인 가족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일본의 혼인 제도는 신고에 의한 효력의 발생(민법 제739조) 및 신고서의 기재 사항이 「부부(夫婦)」로 되어 있는 것(호적법 제74조)을 이유로 지금까지 동성 커플의 혼인 신고가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나 혼인평등을 요구하여 제소된 재판에서는 이미 일본국 헌법에 비추어 위헌 또는 위헌 상태에 있다는 견해가 제시되어 있다(삿포로 지방법원, 후쿠오카 지방법원, 나고야 지방법원, 도쿄 지방법원). 삿포로 고등법원에서의 판결(2023년)에서는 법 아래 평등(헌법 14조)과 혼인의 자유 및 개인의 존엄(헌법 24조)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최근에는 아이를 키우는 동성 커플도 늘고 있다. 남성과의 혼인 중 혹은 싱글로 출산한 경우뿐만 아니라, 정자 제공을 받아 임신 출산을 거치는 경우도 있다. 일반 사단법인 코토맵에 의한 앙케이트 조사(2021년)에서는 조사 대상자 534명 중 141명이 출산·육아중이며, 그 중 55%(77명)가 제3자로부터의 정자나 난자 제공을 통해 자녀를 두고 있다^{xi}. 그러나, ①일본에서는 생식기술은 혼인 외에는 인정되지 않고, ②분만 사실에 따른 부모와 자식 관계는 있지만 파트너와 아이 사이에 친권이 인정되지 않는 문제가 생겨 실제 가족을 형성하는데 큰 지장이 있다. 특히 여성 커플의 경우 소득이 낮은 경우가 많고 세금이나 연금공제 등 특혜를 받을 수 없는 것이 문제이다.

'성별불일치'의 성별 취급 특례에 관한 법률(GID 특례법)

출생시 지정된 성별과 스스로가 인식하는 성이 일치하지 않아 나중에 전자를 변경하는 경우 GID 특례법에 엄격한 조건이 붙어 있다. 특히 불임 수술을 호적의 성별 변경 요건으로 하고 있는 점은 '성과 생식에 관한 건강과 권리'의 관점에서도 국제적으로 문제화되어 왔다. 수술 요건에는 ①「생식선이 없거나 그 기능을 영속적으로 결여할 것」(생식 불능 요건)과 ②「변경하는 성별의 성기와 유사한 외관을 갖추고 있을 것」(외관 요건), 두 가지 조건이 있다. 2023년 10월에 처음으로 대법원이 전원 일치로 생식 불능 요건에 대해서만 위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외관 요건은 여전히 위헌 판단이 나오지 않고 있고 당사자의 비용과 위험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애초에 성별 정정이 '특례법'으로 조치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이다. 성별 정정자는 새로운 호적을 편성해야 하는데 새 호적에 사유가 명기되기 때문에 일본 특유의 호적제도의 특징 아래 제3자가 쉽게 호적의 성별 정정 사실을 알 수 있다.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의 다양성에 관한 국민의 이해증진에 관한 법률(LGBT 이해증진법)

2023년 6월에는 'LGBT 이해증진법'이 국회에서 결의되어 시행되었다. 심의 과정에서 참고인 출석이 이루어졌으나 트랜스 여성에 대해 근거가 없거나 데이터를 자의적으로 취급한 거짓 정보가 공유되어 트랜스 여성을 공격하고 SNS에서도 확산되는 일이 벌어졌다. 트랜스 여성에 대한 공격이나 혐오 발언이 줄어들지 않는다. 이념법이라는 한계뿐만 아니라 이 법에는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유의한다'(제12조)라는 문구가 더해져 차별하는 측의 권리도 옹호하는 형식이 되었다.

정부에 대한 제언 :

- 혼인의 특권을 등록상 성별이 이성인 커플에게만 특권을 부여하는 혼인제도를 개선하여 성중립화를 실시해야 한다.
- GID 특례법의 조건 완화, 특히 수술 요건 두 가지(생식 불능 요건, 외관 요건)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
- GID 특례법으로 설정할 것이 아니라 성별 정정을 위해 호적법 자체의 개정이 필요하다.
- LBT 여성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안으로서 차별금지법의 제정, 또 차별적인 법제도의 개정(이성애주의를 존립구조로 한 상징천황제, 호적제도의 폐지)과 성적지향·성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제도의 제정이 필요하다.

5. 이주민 여성

제11조 : 고용

제12조 : 보건

일본에 거주하는 이민여성을 둘러싼 차별은 해소되지 않았다. 2023년 12월 발표된 체류 외국인 총수는 3,410,992명이다^{xii}. 1,697,001명이 여성으로 등록되어 있다. 2022년 말 발표에서 보호일시해제 총수가 3,391명, 여성은 746명이다^{xiii}. 국내 출입국관리센터의 피수용자 수는 164명으로 발표되었으나 여성수 발표는 없다. 비등록으로 생활하는 이민여성도 상정되지만 대체로 일본의 이민여성수는 1,698,000명(일본의 인구의 1.4%)^{xiv}이며 차별은 복합적이며 잘 드러나지 않는다.

기능실습제도 하에서의 차별 실태

기능실습제도 하에서 여성실습생이 임신·출산한 경우 보건위생기관, 복지서비스, 적절한 의료에 접근할 수 없어 임신·출산을 이유로 실습을 중단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기능실습제도는

1992년에 시작되었고 연수생, 기능실습생의 임신·출산이 늘 존재했다. 기능실습생이던 베트남 국적의 여성은 2019년 쌍둥이를 집에서 고립 사산, 아이들을 종이박스에 넣고 방에서 하룻밤을 지내다 체포 기소됐다^{xv}. 제1심, 2심에서는 유죄판결을 받았고 2023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되었다. 이 재판으로 기능실습생의 임신출산에 대한 권리보장이 없는 상황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제9회 보고(문 19, 답 49 「제5차 기본계획은 외국인 여성이 언어의 차이, 문화·가치관의 차이 및 지역에서의 고립 등의 어려움에 더하여 여성이기 때문에 더욱 복합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가 있음에 유의하여 취업 지원에 대한 다국어 정보 제공 및 상담 체제의 정비를 정하고 있다.」) 에서 서술하고 있는 취업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체제는 실질적으로 기능하고 있지 않다.

체류 자격별 여성의 총수 조사는 공표되지 않았으며 제9회 보고(문7답16)에서 언급된 이민 여성의 생활실태조사의 실시 및 결과 공표는 한정적이다. 「임신에 관한 불이익 처분 금지 통지」(2019년)^{xvi}에도 불구하고, 여성기능실습생 이직 사유에는 임신, 출산이 있다^{xvii}. 통지 후 2022년까지 임신·출산으로 실습 중단을 요구하는 감리단체, 실습실시단체에 대한 수용정지 조치 등 행정처분은 0건으로 통지는 실효성이 없다. 취업희망 여성의 17%만이 복직한다는 현실에서 CEDAW 제11조, 제12조에 위반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호적법, 국적법에 의한 복합적 차별

이민여성과 일본국적자와의 법률혼의 경우, 여성에게는 출신국의 법률이 적용되어 민법 750조에서 제외된다. 94.7%가 남성성으로 개명하는 일본사회에서는^{xviii} 이민여성이 혼인외관계로 간주되어 사회 보장 서비스를 이용할 때 혼인실태 증명이 요구되는 등 일본 국적자와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혼인에 따라 성을 바꾸는 것이 선택사항에서 제외되는 이민여성은 호적법, 국적법상의 차별을 받고 있다. 일본의 법률혼에서 같은 성이 강요되는 것 자체가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

가정폭력을 당하는 이민여성

2021년 스리랑카 국적의 이민여성이 입국 관리국 시설 내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했다. 그녀가 시설에 수용된 계기는 당시 교제 상대방으로부터 때리고 걷어차이는 폭행을 당하고 경찰에 피신한 것이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외국인 주민의 가정폭력에 관한 조치 명령을 2008년에 공포했지만 경찰도 입국 관리국도 그녀를 가정폭력 피해자로 보호하지 않고 체류기간 초과자로 수용했다. 수용 시설에 교제 상대방으로부터 복수하겠다는 편지가 도착하여 직원이 인지하고 있었으나 그녀는 가정폭력 피해자로서 보호받지 못한 채, 심신이 극도로 쇠약해져 사망했다.

이민여성의 체류자격이 혼인관계에 근거하는 경우(배우자 비자에 의한 체재), 가정폭력으로부터의 피난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됨으로써 체류자격을 잃고 미등록 체류 상태가 되는 것

을 두려워해 학대 피해를 계속 받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제9회 보고(답 20)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 형벌 처벌의 대상이며 적절한 처분이 내려지고 있다고 하지만 초과 체류 여성에 대해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부에 대한 제언 :

- 체류 자격에 관계없이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예방 계발 조치 및 법 정비가 필요하다.
- 선택적 부부 별성을 도입해야 한다.
- 기능실습생의 임신, 출산을 이유로 강제로 실습 종료를 하는 감리단체, 실습 실시자의 행정처분에 실효성을 갖게 해야 한다.

6. 재일한인 여성

제2조 : 체약국의 주요 의무

제3조 : 적절한 조치

제5조 : 성별에 따른 역할

재일한인 여성은 일본에서 현재도 민족차별과 성차별의 복합차별에 노출되어 있다. 학생 한정 조사이지만 조선장학회의 「한국인·조선인 학생의 괴롭힘 체험에 관한 의식 조사」(2019-20년)에 의하면 '말로 하는 괴롭힘'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여성 17.2%, 남성 12.7%. 학교에서의 '싫었던 경험(차별적 처우)'도 여성 16.4%, 남성은 9.4%이다. 재일한인 여성 전체를 본다면 국적, 체류 자격, 일본 거주 기간, 연령, 학력, 경제 상황, 가족의 역사, 현재의 가족 상황, 성정체성, 성적 지향 등 속성이 매우 다양하다.

공공 조사의 필요성

제9회 보고(문 4답 9)에는 외국인이며 여성이라는 이중고를 겪는 사람들의 '실태-파악에 노력'한다고 돼 있으나 실제로는 조사가 전무하다. 재일한인 여성이 안고 있는 어려움이 아직 가시화되지 않아 개선을 위한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하는 「앞으로·미래를 창조하는 재일한인 여성 네트워크」의 「제3회 재일한인 여성 실태 조사」(2020~21년, 이하 「조사」)에 의거해 기술한다. 「조사」는 재일한인 여성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귀중한 것이지만 재일한인 여성의 대부분은 통명(일본명)을 사용하기 때문에 서로의 소재를 알 방법이 한정되어 있어 조사표의 배포는 지인, 친구, 재일한인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따라서 재일한인 여성 전체의 다양한 속성의 분포는 반영되지 않았다.

조사 결과

'조사'의 종이매체 설문 결과에 따르면 민족차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이 많다. 자녀에 대한 혐오 발언을 걱정한 응답자는 72.9%, 재일한인이라는 것과 민족명을 밝힘으로써 취업 차별이나 결혼 차별을 받을 것을 걱정하는 응답자는 약 60%에 달했다. 또, 돌봄 직종에서 '조선인은 무섭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는 보고도 있었다(국제인권규약 A2-2, 6-1 위반). 돌봄 노동은 여성에 적합하다는 편견 때문에 돌봄직은 여성이 종사하기 쉬운 직업인데 그나마 조선인임을 이유로 거절당했다는 이 사례는 성차별과 민족차별이라는 이중차별의 심각성을 나타낸다. 그 밖에 취업 차별 근절, 역사 교육 강화, 혐오 발언 금지, 참정권 부여, 재일한인 무연금 문제 해결, 조선학교 공공 원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한반도 문화에는 가부장적 사고가 강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성역할을 담당하는 재일한인 여성은 일본인 여성보다 많아 여기에도 성차별과 민족차별의 이중차별이 나타난다. 63.0%가 '여자가 가사노동을 담당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에 동의했고 남편·파트너의 육아나 가사 부담이 40% 이하라고 대답한 사람은 76.3%. 코로나19 감염 확대로 가사·육아·요양 등 돌봄노동이 늘어난 탓으로, 51%가 여가 시간을, 21.8%가 생활에 필요한 시간(수면이나 목욕)을 줄였다고 답한 가운데 남편·파트너가 돌봄노동 시간을 늘렸다고 답한 사람은 12.4%였다. 한편, 내각부 남녀공동참여국의 조사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가사와 육아 시간이 늘었다고 응답한 남성은 약 25%에 달했다^{xix}. 여기에서도, 가부장적 가치관이 재일한인 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재일한인 여성들이 민족 정체성을 중시하려고 할 때 성차별에 맞닥뜨리는 것이다. 자유 기술에서는 재일한인 남성에게 가정폭력을 당했다거나 한국 민주화운동 단체에서 남성 간부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등의 사례, 제사 때 여성만이 요리 등의 부담을 지는 문제를 호소했다. 이 문제는 피차별 집단인 재일한인 사회 내부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재일한인에 대한 또 다른 공격을 두려워해 고발하기 어렵다는 복잡한 고민과 갈등을 수반한다. 또 코로나 사태로 제사 횟수가 줄거나 지내지 않은 사람 중 98.3%가 가족이나 친척이 모일 기회, 고인·조상을 생각할 기회, 혹은 민족문화에 접할 기회가 줄어 안타깝다고 답한 반면, 준비나 경제적 부담이 줄어 다행이라고 답한 사람은 90.0%에 이른다(복수 응답). 여기에는 민족문화를 지키기 위해 여성이 성차별을 참아 넘긴다는 갈등이 드러난다.

현재로서는 헤이트 스피치 해소법도 남녀 공동 참가 사회 기본법도 이념법이며 벌칙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의식을 바꾸기에는 힘이 부족하고 인권 교육·계발도 부족하다. 이상과 같은 재일한인 여성이 직면하는 이중차별의 어려움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법에 의한 규제가 필수적이다.

정부에 대한 제언 :

- 공공기관에 의한 무작위 추출을 통해 재일한인 여성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 민족(인종) 차별이나 성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7. 결혼 시 강제로 성을 바꾸어야 하는 여성 및 혼외자 차별

제2조 : 계약국의 주요 의무

제16조 : 혼인 및 가족관계

선택적 부부별성제도 도입

남녀공동기본계획은 5년마다 재검토가 이루어져 선택적 부부별성 도입에 관한 민법 개정 에 대해서는 사법적 판단을 고려하면서 검토를 계속한다고 되어 있다. 가장 최근의 제5차 기본계획에서는 선택적 부부별성 제도의 검토에서 남녀 공동참여의 시점에 입각 본래 성의 통칭 사용의 확대, 국회에서의 논의 동향을 고려한다고 하는 등 후퇴를 보이고 있다. 시대의 변화, 사회의 요청을 무시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진행되면서 성의 변경은 개인 식별의 어려움을 초래한다. 일어나 연구 등으로 쌓아 온 신용이나 성과를 잃게 된다. 통칭 사용의 경우, 2개의 성이 동일인물임을 증명하는 절차는 번거롭기도 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공개도 요구된다. 통칭 사용으로 정신적 고통이 생기기도 한다^{xx}. 정부가 추진하는 통칭 사용의 확대는 양성의 본질적 평등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판결은 부부 협의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성을 변경하는 것은 합헌이며 한쪽 성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남녀평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부부의 95% 이상이 남편 성을 선택하고 있다^{xxi}. 가부장적 가족관이나, 고정적인 성별 역할 분담 의식 등이 지배하여 사실상 여성이 성을 바꾸는 것이 현실이다. 민법 750조는 부부 동성이 아니면 법률상 결혼을 인정하지 않아 '혼인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기도 하다. '성명 변경을 강요 받지 않을 자유'는 인권문제이다. 선택적 부부별성 소송 제1차 제2차 대법원 판결은 민법 750조를 합헌으로 했다. 그러나 이는 이 제도의 도입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부부의 성씨는 '국회에서 논의되고 판단되어야 할 사항'이라며 국회에서의 논의를 촉구하고 있다. 1996년 법제심의회 답신 이후 한 번도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구체적인 검토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양성 평등의식 결여를 보여주는 것이다. 제9회 보고(문1답3)에서는 부부 동성 의무에 관하여 여성차별철폐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 의무는 CEDAW 제2조(a)를 위반하고 있다. 3차 소송이 시작됐지만 제도 신설은 입법과 관련된 것이어서 사법심사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견해이다. 그렇다면 신속하게 입법부가 움직여야 한다.

혼외자 차별

일본 정부가 비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조약에는 아동이 출생에 의해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1995년부터 비적출자의 주민표 상 세대주와의 관계도 일률적으로 '자녀'로 기재되게 되었다. 2004년 호적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이 이루어지

면서 관계의 기재가 '남, 여'에서 적출자와 같은 '장남, 2남', '장녀, 2녀'로 변경되었다. 이미 신고된 '남, 여'를 정정할 수 있고 정정된 이력이 남지 않도록 호적을 다시 만드는 신청도 할 수 있게 되었다. 2013년 대법원은 혼외자의 상속재산을 적출자의 2분의 1로 하는 규정이 불평등하다고 판단하여 민법이 개정되었다. 개인의 존엄과 법 아래의 평등을 정하는 헌법에 비추어 검토되어 온 경위가 인정되어, 이러한 개편은 차별적 의식의 배제를 위해 노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호적의 출생 신고에 아직도 「적출자」 「적출이 아닌 자」의 차별적 기재란이 남아 있어(호적법 49조) 제9회 보고(문 25답 67)는, CEDAW 제2조 (a) 위반에 해당한다. 법률상의 어구라고 법무성은 말하지만 아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 권리 침해나 개인의 존중이 손상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정부에 대한 제언 :

- 입법을 염두에 둔 선택적 부부별성 제도 도입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 호적의 출생신고에 있어서 「적출자」 「적출이 아닌 자」라는 기재란을 삭제해야 한다.

-
- i 재일한인은 일본의 조선식민지 지배에 의해 일본에 건너갔고 일본 패전 후에도 일본에 생활기반을 마련하여 살고 있는 사람들과 그 후손들의 총칭이다. 1965년 이후 취업이나 면학, 결혼 등을 위해 일본에 간 사람들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 ii 인정 NPO 법인 브릿지 포스 마일 “전국 아동 양호 시설 퇴소자 추적 조사 2021”(2021년 10월)
 - iii 어린이가정청 2022년도 아동상담소의 아동학대 상담 대응 건수(속보치)
 - iv 상동
 - v <https://www.mofa.go.jp/files/100507035.pdf>
 - vi 여성차별철폐조약 일반권고 제35호 일반권고 제19호 개정판 여성에 대한 젠더 기반 폭력(2017), p.4
 - vii <https://digital.asahi.com/articles/ASS7325RZS73UTFK006M.html>(2024.9.6 열람)
 - viii <https://ryukyushimpo.jp/news/entry-3255998.html>(2024.9.6 열람)
 - ix https://www.jcp.or.jp/akahata/aik23/2023-04-28/2023042802_05_0.html(2024.9.6 열람), <https://mainichi.jp/articles/20240810/k00/00m/040/187000c>(2024.9.6 열람)
 - x <https://www.tokyo-np.co.jp/article/339571>(2024.9.6 열람)
 - xi 신가에 아키토모 외 '일본의 성소수자 출산 육아에 관한 실태파악에 관한 조사보고' '인권문제연구' 제19호
 - xii 출입국재류관리청 체류외국인통계(구 등록외국인통계) 통계표 2023년12월말 <https://www.e-stat.go.jp/stat->

search/files?page=1&layout=datalist&toukei=00250012&tstat=000001018034&cycle=1&year=20230&month=24101212&tclass1=000001060399 (2024.7.18. 열람)

- xiii 출입국재류관리청 '2022년 입관법 위반 사건에 관하여'
https://www.moj.go.jp/isa/publications/press/09_00025.html (2024.7.18. 열람)
- xiv 2023년 출입국관리국이 발표한 체류 외국인 여성수 1,697,001명(주xi참조)에 출입국재류관리청 '2022년 입관법 위반 사건에 관하여'
(https://www.moj.go.jp/isa/publications/press/09_00025.html 2024.7.18. 열람)를 플러스하고 총무성 통계국이 발표한 일본 인구(<https://www.stat.go.jp/data/jinsui/2023np/index.html#a05k01-a> 2024.7.18. 열람)에서 산출.
- xv 사체 유기죄
- xvi 법무성, 후생노동성, 외국인기능실습기구 삼자연맹의 통지서
- xvii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임신출산을 이유로 기능실습 중단 신고가 접수된 수는 1,434명, 이 중 기능실습 계속을 요구한 것은 134명, 실제로 실습 재개까지 이른 사람은 23명이다.
- xviii 2022년 내각부 남녀공동참여국 발표 '혼인 시 부부가 선택한 성'
- xix 『코로나19 하의 여성에 대한 영향과 과제에 관한 연구회 보고서』 p.28
- xx https://www.nichibenren.or.jp/document/assembly_resolution/year/2024/2024_1.html (2024.9.8 열람)
- xxi 2022년 내각부 남녀공동참여국 발표 '혼인 시 부부가 선택한 성'

